

## 제2차 에이스안양 육성 지원사업(기술개발 분야) 변경 공고문

우리원은 지역경제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일정규모를 갖춘 기업을  
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자『제2차 에이스안양 육성 지원사업』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.

### 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제2차 에이스안양 육성 지원사업(기술개발 분야)
- 관련근거 :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
- 신청자격 : 1번 ~ 2번 신청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
  - ▶ 1번 : 직원 수 15명 이상, 3년 평균 매출액 50억 이상 300억 이하 관내 우수기업
  - ▶ 2번 : 안양시 유망창업 인증기업 또는 안양시 우수기업 인증기업
- 신청분야
  - ▶ SW개발 분야 : AI, AR, 메타버스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보안 등
  - ▶ 완제품 개발 분야 : 전기전자, 부품, 광학기기, 소비재(뷰티제품) 등
  - ▶ 기타분야 : 바이오, 교육 콘텐츠, 식음료 공법, 섬유, 유통 플랫폼 등
- ※ 식음료 공법 : 단순 메뉴개발 지원 불가 / 섬유 : 디자인 개발 지원 불가
- 지원내용 : 기술개발비(연간 50,000천원 최대 2년) 3개사 지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사업기간	기업 수	지원금액	기업부담금
기술개발비 지원	2023.11 ~ 2025.11	3개사	최대 100,000(연간 50,000)	연간 26,924

## ○ 제외대상

- ▶ 2021 ~ 2023년 에이스안양 육성 지원사업(기술개발 분야), 스케일업 안양, 블루100 기술개발 지원사업, 유망기업 육성 지원사업, 스마트혁신 R&D 지원사업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 
※ 단 안양시 유망창업 인증기업(Blue100)은 기존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가능
- ▶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 예정기업(선정 후 사업 기간 내 관외 이전 시 지원금 전액 환수)
- ▶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기업
- ▶ 상장사, 중견기업은 신청불가

## II 선정절차

### ○ 서면평가

- ▶ 매출, 고용, 특허, 인증, 기술과제 중복 여부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 평가  
※ 선정규모의 4배수 이상 접수 시 서면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 순으로 2배수 선정

### ○ 대면평가

- ▶ 서면평가 합격기업에 대한 사업 계획 PT 발표 / 평가위원회 구성  
(15분 발표, 10분 질의 /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)  
※ 접수 미달인 경우도 평가 점수 70점(평균) 이상 기업만 선정

## III 지원내용

### ○ 기술개발 지원 : 연간 50,000천원 최대 2년간 지원(부가세제외)

- ▶ **연간 총 기술개발비의 35% 이상 현금 및 현물 기업부담**

※ **기업부담금의 10% 이상 현금 부담 必(협약 시 입금)**

(단위 : 천원)

구분	진흥원 기술개발지원비 (총 기술개발비의 65% 이내)	기업부담기술개발비 (총 기술개발비의 35% 이상)			총 기술 개발비 (합계)
		현금 (기업부담금의 10%이상)	현물 (기업부담금의 90%이하)	소계	
선정기업	50,000	2,692	24,232	26,924	76,924

- ▶ 최종 사업 평가 후 지원금의 15% 기술료 징수
  - ▶ 기술개발비 계상 기준은 <붙임1> 준수
- 교부절차 : [1차 년도] 50,000천원 → [중간평가] → [2차 년도] 50,000천원
- ▶ 별도의 사업 관리 계좌(사업비 전용통장) 개설 및 카드 발급
- 주의사항
- ▶ 공고문(제외대상 및 주의사항) 숙지 미흡, 사업신청 체크리스트, 사업 신청서류 등의 오기입 판단 시 사업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(지원금 환수)
  - ▶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인정되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
  - ▶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은 지원금에 대한 전액 보증액으로 제출
  - ▶ 이행(선금급)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
    - 1차 년도 : 협약일 ~ 2024. 12. 31.
    - 2차 년도 : 협약일 ~ 2025. 12. 31.
  - ▶ 사업비 사용 인정 범위는 협약일로부터 각 지원년도 8월까지 사용 금액
  - ▶ 협약기간 동안 진흥원과 사전 협의 된 사업비 사용 내용만 인정
  - ▶ 불가피한 상황(기술개발인력 퇴사, 용역사 폐업 등)의 경우 진흥원과 협의
  - ▶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 외에는 불가(현금인출 불가)
  - ▶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 필수 증빙

- ▶ 전용통장 입출금내역과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는 일치되게 편철 관리
- ▶ 사업지원금 사용기한(각 지원년도 8월)까지 자금을 집행하고, 별도 공지하는 기간 内 사업지원금 정산결과, 결과보고서, 기술료 15% 등을 진흥원에 입금 및 제출
- ▶ 결과보고서 양식은 개별 배포 예정
- ▶ 정산자료에 대한 진흥원의 검토결과 또는 지정된 회계감사(자금정산 회계법인 위탁) 결과,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, 사업비 반납
- ▶ 연말 성과보고회 기술개발 성과 발표 및 참석 必

## IV 신청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23. 9. 22. ~ 10. 27.
- 접수기간 : 2022. 10. 26. ~ 10. 27. / 14:00 ~ 17:00까지
- 사업공고 :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([www.aba.or.kr](http://www.aba.or.kr))
- 접수방법 : 온라인 및 방문제출 모두 접수 必
  - ▶ 이메일 접수 E-mail 접수처 : [ssy@aba.or.kr](mailto:ssy@aba.or.kr) / [ssyong84@gmail.com](mailto:ssyong84@gmail.com)
  - ▶ 서류 일체 방문 제출 : 원본 1부(책제본 또는 스프링 제본으로 제출)
- 문 의 : 신승용 책임 (☎ 031-8045-6712)
- 제출서류 : 신청서, 증빙자료 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 문 의



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48번길 25  
안양산업진흥원 2층

산업진흥부 신승용 책임

031-8045-6712

[ssy@aba.or.kr](mailto:ssy@aba.or.kr)

## <붙임 1.> 기술개발비 계상 인정 기준

구 분	인 정	불 인 정
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프로젝트 직접 참여 인원의 인건비 지급 인정 ※ 기업 내부 인건비 현물 계상 가능</li> <li>고용보험 가입 직원에 한해 인정 가능하며 실참여 인원의 실명 기재 必</li> <li>기업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(100%를 초과하지 못함)에 따라 계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, 대표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인건비 ※ 1인기업의 한해 대표 인건비 인정</li> <li>인건비는 총 기술개발비의 80% 이상을 넘을 수 없음</li> </ul>
장비 및 연구시설 임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외부 연구시설 등 임차비(사업기간 内 인정)</li> <li>PC, 노트북, 서버, 기타 사무기기 임차비</li> <li>기업 보유 장비의 경우 공인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인감정가격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단가의 10% 이내에서 현물 인정 * PC, 노트북, 서버 등 사무기기는 현물 불인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산 취득을 통한 장비 및 기기 구매</li> <li>기업 보유 장비의 구매 증빙서류 부재</li> <li>장비 및 연구시설 임차비는 총 기술개발비의 50% 이상을 넘을 수 없음</li> </ul>
시제품 제작 및 기술개발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, 외주용역비, 기술이전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산 취득성 재료비 및 사무기기</li> <li>시제품 제작비는 총 기술개발비의 70% 이상을 넘을 수 없음</li> </ul>
기술정보 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비, 학회참가비, 전시회 참가비</li> <li>시장조사 용역비</li> <li>외부 시험분석비</li> <li>인증, 디자인등록, 특허 등 지식재산권 취득 및 컨설팅비(본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한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야근수당, 일반회의비, 문현구입비 등</li> <li>외부 교육 및 참가비 중 체재비 ※ 전시회, 학회 등 참석 증빙이 있는 항공비에 한해서 인정</li> <li>기술정보 활동비는 총 기술개발비의 15% 이상을 넘을 수 없음</li> </ul>
기타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케팅 비용 일체 불인정</li> <li>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만 인정 ※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한해 인정</li> </ul>

<붙임 2.>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
##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
구 분	제출 서류	비 고 (유의사항)
필 수	· 기업재무제표 최근 3년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20년 ~ 2022년 재무제표 각 1부</li> <li>·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만 인정</li> </ul>
필 수	· 사업자등록증	-
필 수	· 신청서 / 사업계획서 등 별첨서류	· 불임 문서 참조(신청서 및 작성 매뉴얼)
필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</li> <li>※ 선정 후 연말 회계감사 시 제출</li> </ul>	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필 수	· 국세 완납 증명서 (공고일 기준)	· 국세청 홈텍스 발급 가능
필 수	· 지방세 완납 증명서 (공고일 기준)	· 정부24 발급 가능
필 수	· 고용보험가입자명부 (공고일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</li> <li>※ 엑셀 출력 금지</li> </ul>
선택	· 가감점 증빙자료	·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매뉴얼의 <참고1> 가감점 기준표 참고
· 수출확대 분야(유망창업기업 인증 취득 신청 시 확인)		
선택	· 수출실적확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) 또는 2) 중 선택</li> </ul> <p><b>1)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회원사인 경우 (www.KITA.net → 회원사 → 인터넷증명서 발급) 자사수출입실적조회</li> <li>- 비회원사인 경우 한국무역협회 방문 (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국내지역본부)</li> </ul> <p><b>2)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www.trass.or.kr)에서 발급</li> <li>- 메인화면의 '자사수출입정보' 또는 '자사실적정보' 발급</li> </ul>
· 기술투자(확보) 분야(유망창업기업 인증 취득 신청 시 확인)		
선택	· ISO 관련 인증서 사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근 5년 이내 취득분만 인정</li> <li>· 종류 : 9001, 14001, 14004, 22000, 27001 등</li> </ul>
선택	· 해외규격인증 사본	· 최근 5년 이내 취득분만 인정
선택	· 국내규격인증 사본	· 최근 5년 이내 취득분만 인정
선택	· 특허증 및 실용신안권등록증 사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출원포함</li> <li>· 최근 5년 이내 취득분만 인정</li> <li>·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제외</li> </ul>

구 분	제출 서류	비 고 (유의사항)
선택	· NEP(신제품) 인증서 사본	·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
선택	· NET(신기술) 인증서 사본	·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
선택	· 정부 기술개발과제사업 참여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만 인정</li> <li>· 협약서 사본, 공문서 사본만 인정</li> <li>※ 기술개발과 무관한 협약서 등은 불인정</li> </ul>
선택	·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	· 발급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선택	· 기술혁신형기업 (INNO-BIZ) 인증서 사본	·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인증서
선택	·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	· 확인기관 :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, 벤처캐피탈 협회
선택	·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	·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인증서
· 투자유치 분야(유망창업기업 인증 취득 신청 시 확인)		
선택	· 투자유치 확인서	· 투자유치 계약서 사본 (날인 없을 시 불인정)